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0. 1. 15.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0. 1. 18.
다. 상 정 일 자 : 2010. 1. 21.(제16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와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 할 수 있게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새마을 운동 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제천시 새마을회, 새마을 지도자 제천시협의회, 제천시 새마을 부녀회, 직·공장 새마을 운동 제천시 협의회, 새마을문고 제천시 지부, 새마을 교통봉사대 제천지대, 제천시 새마을청소년봉사단
- 새마을지도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표창
 -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 기타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지원 범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4조)

-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보험가입 규정을 마련함 (안 제5조)

-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새마을 운동 조직의 활성화와 조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꾀 하므로써 새마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현재 4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음.

※ 충북도 시행자치단체 : 청주시(08.10.31) 충주시(08.5.20)

청원군(09. 4.20) 진천군(09.6.8)

- 다만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일부 단체(새마을 교통봉사대 제천시대, 제천시 새마을청소년봉사단)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의한 보조지원 등의 적용을 제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의한 등록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와 보험보장 내용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연간 소요예산, 그리고 제천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 보험가입대상자와 중복될 경우 운영방안, 타 단체와의 형평성문제 등도 살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답변자 : 사회복지과장)

- **질의)** 단체와의 형평성논란 대처방안과 지원액이 증가되는지? (양순경 의원)

답변) 다른 단체에도 나름대로 이런 활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격히 나름대로 인정되고 이랬을 때에는 추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도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더 지원되는 예산의 변동사항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위한 나름대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대상 회원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료를 산정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1084명 정도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 공제회에서 가입하는게 1인당 보험료가 2,576원 정도인데 저희들이 한 3천원 정도를 본다고 하더라도 연간 예산 소요액이 325만 2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됨.

5. 소수의견

- 사회복지과 소관 단체들이 활동 열심히 하는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람. (박성하 의원)

6. 토론요지

- 조례안 제2조 제1호 중 새마을 교통봉사대 제천시지대, 제천시 새마을청소년봉사단 등 2개단체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의 규정이 정한 보조제한에 해당될 수 있는바 위 2개단체를 삭제하고자 함.

7. 심사내용

- 이정임의원의 3인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결정 ⇒ “이의없음”으로 수정안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

8. 심사결과

“수정 가결”

9.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2조(정의) 제1호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제천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제천시지대, 제천시청소년새마을봉사단을 말한다.」를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제천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를 말한다.」로 함.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p> <p>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제천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 <u>새마을교통봉사대제천시지대, 제천시청소년새마을봉사단을 말한다.</u></p>	<p>제2조(정의)-----.</p> <p>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제천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제천시협의회, 제천시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운동제천시협의회, 새마을문고제천시지부를 말한다.</p>